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7,882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 정 희 印

1975년 12월 5 일

국무총리 김 종 필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김 재 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 항 제 2 호의 “연립주택”이라 함은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2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제 1 항제 3 호의 “아파트”라 함은 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와 대지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330평방미터이상,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건물배치 계획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바닥 면적이 그 이하인 때에도 이를 아파트로 본다.

④ 제 1 항의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본문 3. 다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1 본문 3의 다에(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보조를 받는 법인과 생활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의료 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8)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되는 법인으로서 합병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별표 1의 별지 부표 중 제 8 호 본문과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가매입대상	첨가매입금액
8. 건축허가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평방미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은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1973. 2. 26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 2. 27 이후 이 영 공포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주거전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연면적에 해당하는만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주택채권을 첨가 매입하게 한다.	
가. 주거전용 건축물(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본다)	연면적 3.3m <sup>2</sup>
(1) 연면적 85평방미터 초과 100m <sup>2</sup> 미만인 경우	1,000
(2) 연면적 132m <sup>2</sup> 미만인 경우	3,000
(3) 연면적 165m <sup>2</sup> 미만인 경우	5,000
(4) 연면적 231m <sup>2</sup> 미만인 경우	10,000
(5) 연면적 330m <sup>2</sup> 미만인 경우	20,000
(6) 연면적 660m <sup>2</sup> 미만인 경우	30,000
(7) 연면적 660m <sup>2</sup> 이상 경우	50,000

별표 1의 별지 부표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첨가매입대상	첨가매입금액
10. 주택자재생산업면허	
가. 시멘트가공제품생산업	
(1) 서울특별시	
부산시	100,000
대구시	
인천시	
(2) 각 도청 소재지	50,000
(3) 기타지역	30,000
나. 기타 생산업	100,000